■ 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45호의6서식] <신설 2022. 6. 16.>

발급번호:

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(계란)

이력번호					
거래정보	납품업체명	납품처명	품목	수량	
①농장 정보	성 명			농장식별번호	
	소재지			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(HACCP)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	
②등급 판정 신청 정보	신청인				
	업체명				
	주소				
	축산물가공 영업소, 식용란선별포장업소, 식용란수집 판매업소	업체명		등급판정일자	
		소재지		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(HACCP)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	
③등급 정보	품목				
	세부내역	일련번호	수량	중량규격	품질등급	비고
	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					
④인증 정보	인증내역			인증번호	비고
	친환경축산물				

「축산법」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8호에 따라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

발급 횟수: 건 발행일자: 년 월 일

※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46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http://www.ekape.or.kr)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